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5
----------	-----------

2018년 12월 20일
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7조제3항의 경우 원안의 개정문과 신·구조문대비표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,

동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서울디자인재단과 서울문화재단 관련 개정안의 경우 각 재단의 정관과 동일하게 임원의 임기가 명시된 것과 달리 동 개정안의 개정문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정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임원의 연임 횟수를 1회로 제한하도록 수정함(안 제7조제3항)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3항 중 “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”를 “1회에 한하여
연임될 수 있다.”로 한다.

〈 수정안조문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임원의 임기는 <u>정관이</u> <u>정하는</u> 바에 따른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조(임원) ① ~ ② (현행 과 같음)</p> <p>③ 임원의 임기는 <u>3년으</u> <u>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</u> <u>임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임원) ① ~ ② (개 정안과 같음)</p> <p>③ 임원의 임기는 <u>3년으</u> <u>로 하며, 1회에 한하여</u> <u>연임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7조제3항 중 “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”를 “3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 신·구조문대비표 〉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임원) 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임원의 임기는 <u>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7조(임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임원의 임기는 <u>3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